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표시방법)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,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100mm<sup>2</sup>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마크 또는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,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는 당해 제품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, 인쇄 또는 각인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품의 구조상 당해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다.</li> <li>3.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li>4. 전선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</li> </ul> </li> </ol>	<p>제31조(표시방법)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,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(단서조항 삭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,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는 당해 제품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,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(단서조항 삭제)</li> <li>3.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/ol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(600V고무절연 전선, 고무코오드,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)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코오드이외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1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다.

나.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한다.

5. 전구류는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하여야 한다.

#### < 신 설 >

#### < 삭 제 >

#### < 삭 제 >

②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을 표시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mm<sup>2</sup>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·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,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mm<sup>2</sup>초과 900mm<sup>2</sup>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 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,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.

2. 전선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

가.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(600V 고무절연 전선, 고무코오드,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)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코오드이외 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1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다.

나.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한다

3. 전구류는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·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 및 정격을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구조상 당해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.

5. 전기용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는 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, 나머지 표시사항은 전기제품의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.

[별표 6]

기타 필요한 표시(제29조 관련)

1. ~ 3. (생략)

4. 정격(전압, 전류, 주파수, 소비전력, 용량 등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)

5.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(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)

6.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㉠의 기호

7.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

8.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(예 : 제조년월,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)

9. 애프터서비스 연락처(실질적으로 A/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)

< 신 설 >

비고 1. (생략)

2.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등,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,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.

[별표 6]

기타 필요한 표시(제29조 관련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 삭 제 >

4.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(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)

< 삭 제 >

< 삭 제 >

5.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(예 : 제조년월,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)

6. 애프터서비스 연락처(실질적으로 A/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)

7.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

비고 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제1호부터 제7호까지 -----  
-----.